

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71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2.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안전관리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사·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사.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사. 안전관리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자치법규안 : 덧붙임

4. 참고사항 : 덧붙임

관련법령 발췌 1부

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掌한다.

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4.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5.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시장)
2. 영주경찰서장
3. 제3260부대 3대대장
4. 경상북도 영주교육청 교육장
5. 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
6. 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7.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·소장
8.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

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③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)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 ①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②실무위원회는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안전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

2.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

3. 기관별 재난관리계획의 수정·보완 사항

4. 기관별 협조사항 협의 등 기관·단체간 공조체제 구축

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주사가 된다.

제8조(위원의 활용) 새로운 정책의 개발·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

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 연구·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)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회의록의 비치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, 안건,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의결과의 통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 (발췌)

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】

- 제11조(지역위원회)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소속하에 시·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】

- 제40조(안전관리전문기관)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소방기본법」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
2. 농업기반공사 및 「농지관리기금법」에 의한 농업기반공사
3.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
4. 「전기사업법」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
5. 「에너지이용합리법」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
6. 「한국산업안전공단법」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
7. 「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」에 의한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

- 6 -

8. 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
9.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교통안전공단
10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의한 한국방재협회
11. 「소방기본법」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
12. 「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
13.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